

이용약관

변경사항 비교표

변경 사항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(주)굿텔레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</p> <p>제 1조 ~ 제 7조 (생략)</p> <p><u>제7_1조 (서비스의 이용 장애)</u> 1.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2. 회사는 이용자의 ISP업체 및 네트워크 기기의 장애로 발생된 문제는 책임이 없습니다. 1) 이용자가 직접 설치한 단말 장비가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,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내지 회사의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2) APP 사용 권장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스마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</p> <p><u>제8조 (서비스의 내용)</u> (생략)</p> <p><u>제9조 (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)</u> (생략)</p> <p><u>제10조 (서비스 이용 중지)</u> (생략)</p> <p><u>제10_1조 (서비스 종료)</u>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	<p>(주)굿텔레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</p> <p>제 1조 ~ 제 7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 8조 (서비스의 이용 장애)</u> 1.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2. 회사는 이용자의 ISP 업체 및 네트워크 기기의 장애로 발생된 문제는 책임이 없습니다. 1) 이용자가 직접 설치한 단말 장비가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,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내지 회사의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의 경우 2) APP 사용 권장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스마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의 경우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10조 (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11조 (서비스 이용 중지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12조 (서비스 종료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13조 (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)</u> 1. 회사는 천재지변, 시스템(통신) 장애 및 점검, 서비스 양도 및 폐지(휴지)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 1)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(안내)를 합니다.</p>	<p>조항 숫자 변경 (제 8조 ~ 전체 조항)</p> <p>문장 수정</p> <p>조항 추가 천재 지변 및 서비스 제공 불가의 경우</p>

<p>(생략)</p>	<p><u>2)회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게 이메일,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.</u>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	
<p><u>제 11 조 (서비스 이용정지)</u> (생략)</p>	<p><u>제14조 (서비스 이용 정지)</u> (현행과 동일)</p>	
<p><u>제 11_1 조 (서비스 일시정지)</u> 1.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<u>일시 중단</u>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"회사"에 신청하여야 하며, <u>일시이용중단 회수</u>는 1년에 3회(1회 최대 1개월)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, 1년 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 3개월 초과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, 서비스가 정상 상태로 환원 처리 됩니다. <u>착발신이 모두 중지</u> 됩니다.</p>	<p><u>제15조 (일시정지 요청)</u> 1.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<u>일시 정지</u>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"회사"에 신청하여야 하며, <u>일시정지 횟수</u>는 1년에 3회(1회 최대 1개월)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, 1년 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 일시정지 중에는 착발신이 모두 정지되며, 3개월 초과 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, 서비스가 정상 상태로 환원 처리 됩니다.</p>	<p>약관명 변경</p> <p>용어정의 명확화</p> <p>용어정의 명확화</p>
<p><u>제 12 조 (서비스 이용 해지)</u> (생략)</p>	<p><u>제16조 (서비스 이용 해지)</u> (현행과 동일)</p>	
<p><u>제13조 (서비스 정지 이의 절차 및 이용책임)</u> (생략) 2.<u>전기통신사업자</u>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<u>제17조 (서비스 정지 이의 절차 및 이용책임)</u> (현행과 동일) 2.'<u>회사</u>'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대상의 명확화</p>

<p>3.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3.'회사'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대상의 명확화</p>
<p><u>제 14 조 (서비스 이용 책임 및 통화 기록 내용)(생략)</u></p>	<p><u>제18조 (서비스 이용 책임 및 보관)</u> (현행과 동일)</p>	<p>약관명 변경</p>
<p><u>제 15 조 (요금의 종류 및 과금기준)</u> (생략)</p>	<p><u>제19조 (요금의 종류 및 과금 기준)</u> (현행과 동일)</p>	
<p>5.회사는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경이 불가피하는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금의 변동을 서면 또는 온라인에 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6.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료를 익월 10일까지 청구합니다.</p>	<p>5.회사는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금의 변동을 서면 또는 온라인에 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6.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료를 익월 10일까지 청구합니다.</p>	<p>내용의 구체화</p>
<p><u>제 15_1 조 (표준 통화/문자/기타 요금 (VAT 미포함))</u></p> <p>1.회사의 상품은 통화요금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면 표준 통화요금을 적용합니다.</p> <p>2.표준 시내 39원 / 3분, 시외 39원 / 3분, 이동전화 14.5원 / 10초, 전국대표번호 60원 / 1분, 특수번호 150원 / 3분 / Fax 45원</p>	<p><u>제20조 (표준 통화/문자/기타 요금(VAT 미포함))</u></p> <p>1.회사의 상품은 통화요금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면 표준 통화요금을 적용합니다.</p> <p>2.표준 요금 : 시내 39원/3분, 시외 39원/3분, 이동전화 14.5원/10초, 전국대표번호 60원/1분, 특수번호 150원/3분, Fax 45원</p>	<p>내용의 구체화</p>
<p><u>제 15_2 조 (표준 서비스 요금(VAT 미포함))(생략)</u></p>	<p><u>제21조 (표준 서비스 요금(VAT 미포함))</u> (현행과 동일)</p>	
<p><u>제 16 조 (요금제의 변경)</u> (생략)</p>	<p><u>제22조 (요금제의 변경)</u> (현행과 동일)</p>	

<p><u>제 17 조 (보증금)</u> 1. 회사는 일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 금액은 정액제는 월 청구 금액, 종량제는 회선당 5만원으로 합니다.</p> <p><u>제 18 조 (요금납입책임자 및 의무)</u> (생략)</p> <p><u>제 19 조 (체납요금 등의 징수 및 제한)</u> (생략)</p> <p><u>제 20 조 (요금 등의 이의신청)</u> (생략)</p> <p>3.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4.회사는 <u>상기2항의 규정</u>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불 또는 오불이 인정될 경우 그 요금이 이미 지불된 때에는 제22조(과/오납 요금의 정산)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. 그러나 그 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지불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지불 의무자에게 지불 청구서를 재발송 합니다.</p> <p><u>제 21조 (불법 면탈요금의 부과)</u> 1.회사는 서비스 요금을 불법으로 면탈한 이용자에게 대하여 면탈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. 2.<u>1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불법면탈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.</p> <p><u>제 22조 (요금의 반환)</u> (생략)</p>	<p><u>제23조 (보증금)</u> 회사는 일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 금액은 정액제는 월 청구 금액, 종량제는 회선당 5만원으로 합니다.</p> <p><u>제24조 (요금납입책임자 및 의무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25조 (체납요금 등의 징수 및 제한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26조 (요금 등의 이의신청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3.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4.회사는 <u>상기 제2항의 규정</u>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불 또는 오불이 인정될 경우 그 요금이 이미 지불된 때에는 제28조(요금의 반환)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. 그러나 그 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지불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지불 의무자에게 지불 청구서를 재발송합니다.</p> <p><u>제27조 (불법 면탈요금의 부과)</u> 1.회사는 서비스 요금을 불법으로 면탈한 이용자에게 대하여 면탈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. 2.<u>상기 제1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불법면탈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.</p> <p><u>제28조 (요금의 반환)</u> (현행과 동일)</p>	<p>보증금 내용 추가</p> <p>대상의 명확화 용어 변경</p> <p>대상의 명확화</p>
---	--	--

<p><u>제 22_1조 (요금의 환불)</u> (생략)</p> <p>3. 회사의 요금제, 서비스, 부가서비스 금액이 아닌 별도의 충전금만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용자가 회사로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, <u>환불되지 않은 충전금은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되고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 및 자동이체 계좌를 통한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.</u></p> <p>4. <u>계좌 환불 시 가입자 본인의 계좌 및 자동이체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하며, 본인 외의 계좌는 법적으로 가족관계(확인 필요 서류 제출)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에 한해 환불합니다.</u></p>	<p><u>제29조 (요금의 환불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회사의 요금제, 서비스, 부가서비스 금액이 아닌 별도의 충전금만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용자가 회사로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, 환불되지 않은 충전금은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.</p> <p>4.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 및 자동이체 계좌를 통한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, 계좌 환불 시 가입자 본인의 계좌 및 자동이체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. 본인 외의 계좌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필요서류 제출 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에 한해 환불합니다.</p>	<p>중복 내용 삭제</p> <p>환불에 대한 내용 일부 수정</p>
<p><u>제 23조 (회사의 의무)</u> (생략)</p> <p>3-1.회사는 이용자가 발급받은 070 번호의 불법 스팸 사용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 DTMF 전송 및 통신사 가입확인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4.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<u>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</u> 다만,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<u>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<u>제30조 (회사의 의무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4. 회사는 이용자가 발급받은 070 번호의 불법 스팸 사용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 DTMF 전송 및 통신사 가입확인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5.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인 없이 <u>제3자에게 제공,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</u> 다만,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<u>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제공에 대한 내용 추가</p>
<p><u>제 24조 (이용자의 의무)</u></p> <p>3.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,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</p> <p>4.이용자는 <u>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</u> 광고성 정보 전송</p>	<p><u>제31조 (이용자의 의무)</u></p> <p>3.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,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</p> <p>4.이용자는 <u>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(영리목적의</u></p>	<p>법적 준용 조항 추가</p>

<p><u>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(생략)</p>	<p><u>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	
<p>(신설)</p>	<p><u>8.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</u></p>	<p>약관 추가</p>
<p>(신설)</p>	<p><u>9.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 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.</u></p>	<p>약관 추가</p>
<p>(신설)</p>	<p><u>10.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,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약관 추가</p>
<p><u>제 24_1조 (통지 및 송달)</u> <u>1.이용자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활용 하여 이용자에게 각종 통지를 송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</u></p> <p>1)공시문, 회사의 규칙 및 회사와 이용자의 협의 등. 2)사이트내 메시지, 팝업 메시지 등 3)이용자가 회사에 남긴 연락방식인 이메일, 휴대폰 메시지, 서신등</p> <p>2.회사는 상술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며, 발송이 성공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. 발송한 서면통지는 제공된 연락 주소에 따라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다섯번째 날을 송달일로 간주합</p>	<p><u>제32조 (통지 및 송달)</u> 1.이용자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각종 통지를 송달합니다.</p> <p>1)공시문, 회사의 규칙 및 회사와 이용자의 협의 등. 2)사이트 내 메시지, 팝업 메시지 등 3)이용자의 이메일, 전화, 문자, 서신 등으로 송달</p> <p>2.회사는 상술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며, 발송이 성공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발송한 서면통지는 제공된 연락 주소에 따라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다섯번째 날을 송달일로 간주합니다.</p>	<p>불필요한 내용 삭제</p> <p>불필요한 내용 삭제</p> <p>기준 명확화</p>

<p>니다.</p> <p><u>제 25조 (양도 금지)</u></p> <p><u>제 26조 (이용자 보호)</u> 1)전기 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)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</p> <p><u>제 27조 (손해배상)</u> 1.회사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게 통지한 때 또는 이용자가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, 월 누적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<u>제27조 2항에 의거하여</u> 배상합니다. 단,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.</p> <p><u>제 28조 (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 등)</u></p> <p>1)<u>제 7_1조, 제 23조에 해당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용자 환경으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사용 교육 등의 목적일 경우 15_2조 9항의 비용이 청구 됩니다.</u> 2)발생된 비용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 후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신설)</p>	<p><u>제33조 (양도 금지)</u></p> <p><u>제34조 (이용자 보호)</u> 1)전기통신사업법 <u>제32조(이용자보호)</u>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)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</p> <p><u>제35조 (손해배상)</u> 1.회사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게 통지한 때 또는 이용자가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, 월 누적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<u>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(손해배상)와 본조 제2항에 따라</u>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.</p> <p><u>제36조 (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 등)</u></p> <p>1)<u>제 8조 서비스 이용장애, 제31조에 해당된 회사의 의무가 아닌 이용자 환경으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사용 교육 등의 목적일 경우 제21조 제9항의 비용이 청구됩니다.</u> 2)발생된 비용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 후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제37조 (불만처리)</u> 1. 불만사항은 일반전화,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. 2. 불만사항 처리는 민원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</p>	<p>법적 준용 조항 추가</p> <p>법적 준용 조항 추가</p> <p>내용 수정</p> <p>약관 추가</p>
--	--	---

하며,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.

불만 형태	유형	원인	처리절차	처리기간
서비스 관련	통신 및 서비스 장애	회사 귀책	사과 및 품질개선	즉시 /1 일
		회원 귀책	대고객 설명	즉시 /1 일
요금 관련	청구요 금 이 의	회사 귀책	과금전 : 비과금 요청 과금후 : 환불	즉시 /1 일
		회원 귀책	대고객 설명	즉시 /1 일
기타	기타 이의	회사/ 회원 귀책	사과 및 품질개선, 대고객 설명	즉시 /7 일

제29조 (권리의무의 양도)

제 30조 (불가항력)

제 31조 (분쟁 해결)

제 32조 (보증보험 가입)

회사는 파산 등 그에 상응한 조건하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.

제38조 (권리의무의 양도)

제39조 (불가항력)

제40조 (분쟁 해결)

제41조 (보증보험 가입)

회사는 파산 등 그에 상응한 조건하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4(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)에 따라 보증보

법적 준용 조항 추가

제 33조 (신의 성실의 원칙)

제 34조 (기타 계약과의 관계)

제 35조 (단말기에 대한 소유권 및 증명)

제 36조 (단말기 분실 및 손실)

1.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헤드셋 분실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단말기 분실 및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2.손해 배상의 한도는 단말기 금액을 넘지 아니합니다.

3.회사에서 제공하는 IP Phone, Gate way 사용 모델은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내에서 유동적으로 변경 됩니다.

IP-255W79,200원(V.A.T 포함가)

IP-460S79,200원(V.A.T 포함가)

IP-460GW158,400원(V.A.T 포함가)

IP-460PW158,400원(V.A.T 포함가)

MWP-2500W237,600원(V.A.T 포함가)

MTA-G631W79,200원(V.A.T 포함가)

SIP-T23GW220,000원(V.A.T 포함가)

IPPhone헤드셋 ₩ 44,000원 (V.A.T 포함가)

Gateway

1portW132,000원(V.A.T 포함가)

2portW143,000원(V.A.T 포함가)

4portW495,000원(V.A.T 포함가)

8portW660,000원(V.A.T 포함가)

제37조 (사설전화교환기의 보안조치 사항 : 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조치)

1.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해서 전화번호 임의변작을

함에 가입하였습니다.

제42조 (신의 성실의 원칙)

제43조 (기타 계약과의 관계)

제44조 (단말기에 대한 소유권 및 증명)

제45조 (단말기 분실 및 손실)

1.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헤드셋 분실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단말기 분실 및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2.손해 배상의 한도는 아래에 표시한 단말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.

3.회사에서 제공하는 IP Phone, Gate way 사용 모델은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내에서 유동적으로 변경됩니다.

IP Phone

모델명	금 액
IP-255	79,200 원
IP-460S	79,200 원
IP-460G	158,400 원
IP-460P	158,400 원
MWP-2500	237,600 원
MTA-G631	79,200 원
SIP-T23G	220,000 원
IP Phone 헤드셋	44,000 원

Gate way

모델명	금 액
1 port	132,000 원
2 port	143,000 원
4 port	495,000 원
8 port	660,000 원

(삭제)

표로 내용 변경

<p>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.</p> <p>1-1.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 (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)</p> <p>1-2.사설전화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</p> <p>1-3.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 패치</p> <p>1-4.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</p> <p>2.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.</p> <p>제38조 (발신번호 변작 금지)</p> <p>1.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</p> <p>4-5.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하여 정지/해지가 될 경우,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된 모든 상품의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</p> <p>제39조 (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) (생략)</p> <p>제40조 (이용정지) (생략)</p> <p>제40_1조 (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절차) (생략)</p> <p>2)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,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•모사전송•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3)전기통신사업자는 제38조에 조치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일이 남아 있어도, 일체의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 만약, 후불 요</p>	<p>제46조 (발신번호 변작 금지)</p> <p>1.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</p> <p>5)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하여 정지/해지가 될 경우, '회사'와의 계약된 모든 상품의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</p> <p>제47조 (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의 제한)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48조 (서비스 이용 정지)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49조 (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절차) (현행과 동일)</p> <p>2)'회사'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,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•모사전송•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3)'회사'는 제38조에 조치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일이 남아 있어도, 일체의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 만약, 후불 요금제를 사</p>	<p>불필요한 내용 삭제</p> <p>대상의 명확화</p> <p>승낙 → 승인 수정</p> <p>대상의 명확화</p> <p>대상의 명확화</p>
--	---	--

<p>금제를 사용할 경우, 정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요금을 청구 합니다.</p> <p>2.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</p> <p>1)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<u>전기통신사업자에게</u>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가)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</p> <p>나)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</p> <p>다)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</p> <p>2)<u>전기통신사업자</u>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<u>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3)<u>전기통신사업자</u>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제41조 (계약해지)</u></p> <p>1.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</p> <p>2.<u>제40조4항</u>이 3개월 이내 총 가입회선의 1/5를 초과 하는 경우</p> <p><u>제42조 (이용자의 의무)</u> (생략)</p>	<p>용할 경우, 정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합니다.</p> <p>2.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</p> <p>1)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'<u>회사</u>'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가)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</p> <p>나)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</p> <p>다)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</p> <p>2)'<u>회사</u>'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<u>통지합니다.</u></p> <p>3)'<u>회사</u>'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합니다. 다만,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제50조 (계약해지)</u></p> <p>1.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</p> <p>2.<u>제48조 4항</u>이 3개월 이내 총 가입회선의 1/5를 초과하는 경우</p> <p><u>제51조 (이용자의 의무)</u> (현행과 동일)</p>	<p>대상의 명확화</p> <p>대상의 명확화</p> <p>실질 반영</p> <p>대상의 명확화</p> <p>조항 번호 수정</p>
--	---	---

<p><u>제43조 (회사의 의무)</u> (생략)</p> <p><u>제44조 (이용권의 양도.승계)</u> (생략)</p> <p><u>제45조 (계약의 해제.해지)</u>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>(생략)</p> <p><u>제45_1조 (계약의 해지의 따른 위약금)</u> (생략)</p> <p><u>3.제45조 항목 외의 이용자 요청으로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</u> 4.위약금 산정은 <u>표준요금(15_1조, 15_2조)</u>을 기준으로 합니다. 5.위약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 1)IP-Phone위약금 "(단말기 금액 ÷ 계약기간) × 잔여 계약 개월" 2)통화료 위약금 "사용 개월 × 할인된 통화요금" 3)서비스 위약금 "(표준 서비스 요금 - 서비스 계약금액) × 사용 개월"</p> <p><u>제46조 (번호이동성)</u></p> <p><u>제47조 (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)</u></p> <p><u>제48조 (문자메시지 이용자 의무)</u></p>	<p><u>제52조 (회사의 의무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53조 (이용권의 양도.승계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54조 (계약의 해제 및 해지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4.기타 이용자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, 개인정보보호 등의 심각한 위법사항, 침해활동 등으로 회사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</u></p> <p>(현행과 동일)</p> <p><u>제55조 (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)</u>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4.제54조 항목 외의 이용자 요청으로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</u> 5.위약금 산정은 <u>표준요금(제20조, 제21조의)</u>을 기준으로 합니다. 6.위약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 1)IP-Phone 위약금 "(단말기 금액 ÷ 계약기간) × 잔여 계약 개월" 2)통화료 위약금 "사용 개월 × 할인된 통화요금" 3)서비스 위약금 "(견적서상 기본 가격 - 서비스 계약금액) × 사용 개월" 7. 55조 6항 3호의 '견적서상 기본 요금'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본 이용약관 21조 5항 서비스 상품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됩니다</p> <p><u>제56조 (번호이동성)</u></p> <p><u>제57조 (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)</u></p> <p><u>제58조 (문자메시지 이용자 의무)</u></p>	<p>약관 추가</p> <p>조항 번호 수정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